부속서 III

투자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인도네시아

목록 가

주해

1.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이 목록은 다음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이 목록과 목록 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목록 접근방식과 함께 네거티브 목록을 따른다.

가. 이 목록은 동결 의무 대상이지만 래칫 메커니즘 대상은 아닌 기존의 비합치 조치와 관련된 약속을 규정한다. 그리고
나. 목록 나는 분야, 하위 분야 그리고 행위에서 조치와 관련된 정책 유연성을 규정한다.

3. 각 유보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들)**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들)**는 유보된 구체적인 산업, 제품 및 행위를 지칭한다.

다. **산업 분류**는 다음에 따라 유보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1)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광업 및 채석업의 경우 국제표준산업분류3차 개정안(이하 “ISIC”라 한다)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아세안 통일 관세품목분류표 코드, 또는

2) 유보가 ISIC에 정확히 합치하지 않는 경우, 인도네시아는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적용범위를 명시하였다.

라. **정부 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 수준(예, 중앙 또는 지방)을 명시한다.

마. **의무의 유형**은, 각 경우에 맞게, 나열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의 의무를 지칭한다.

바. **조치내용**은 유보된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지칭한다. 그리고

사. **조치근거**는 유보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지칭하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적시된다.

4. 유보의 해석 시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조치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5. 이 주해는 인도네시아 유보의 일부를 구성한다.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토지의 취득 또는 임대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방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토지 소유권(hak milik)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제한된다. 주: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고 주소를 둔 외국 국민 및 외국기업은 다음의 권리에 근거하여 토지 및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a. 임차권(hak guna usaha)은 외국기업에 최대 35 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5 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b. 건축권(hak guna bangunan)은 외국기업에 최대 30 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0 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c. 사용권(hak pakai)은 (1) 외국 국민에 최대 30 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0 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고, (2) 외국기업에 최대 25 년의 기간 동안 부여되며 추가로 20 년의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d. 임대권(hak sewa)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외국 국민 또는 외국기업에 부여된다. 그러한 토지 및 재산의 취득은 관련 당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과 제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조치근거	:	- 1945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 33 조 - 농민 원칙의 기본규정에 관한 1960 년 법률 제 5 호 - 토지경작권, 구조물이용권 및 토지이용권에 관한 1996 년 정부령 제 40 호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위한 거주 또는 주거 소유에 관한 2015 년 정부령 제 103 호

2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외국인 투자 설립의 등록 요건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정 분야에 의하여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1]는 총 투자금액이 100 억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초과한다(토지 및 건물은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정의된 산업 분야의 대규모 사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는 총 투자금액이 150 억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초과한다(토지 및 건물은 포함한다).
조치근거	:	- 투자에 관한 2007 년 법률 제 25 호 -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관한 2008 년 법률 제 20 호 - 산업 업종 분류를 위한 근로자수 및 투자액에 관한 2016 년 산업부령 제 64 호 - 투자 면허 및 설비를 위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2018 년 투자조정위원회규정 제 6 호

[1]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 제25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2]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법에 근거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이다.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직접투자를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3]는 「투자에 관한 2007 년 법률」제 25 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조치근거	:	- 투자에 관한 2007 년 법률 제 25 호 -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 년 법률 제 40 호

[2]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라는 용어는 「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제25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3]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자”라는 용어는「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제25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4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최종이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지 유통 대리인을 임명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란 이 목록의 유보항목 3 번에 따라 열거된 조치근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로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자 또는 법적 실체를 말한다.
조치근거	:	-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관한 2008 년 법률 제 20 호 - 상품 유통의 일반 규정에 관한 2016 년 통상부령 제 22 호 - 상품 및/또는 서비스 대리인 또는 유통업자 등록 발행 규정 및 절차에 관한 2006 년 통상부령 제 11 호 - 투자 면허 및 설비를 위한 지침 및 절차에 관한 2018 년 투자조정위원회규정 제 6 호

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 년 법률」제 40 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인사 관련 직책을 맡도록 요구된다.
조치근거	:	- 인력에 관한 2003 년 법률 제 13 호 - 외국인 고용 및 근로 동반자 교육 및 훈련 실시에 관한 2014 년 대통령령 제 74 호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한된 특정 직책에 관한 2012 년 인력 및 이주부령 제 40 호 - 외국인 고용에 관한 2018 년 대통령령 제 20 호

6

분야	:	어업
하위 분야	:	포획 어업
산업 분류	:	ISIC 0500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포획 어업이 금지된다.
조치근거	:	- 어업에 관한 2009 년 법률 제 45 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4 년 법률 제 31 호 -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1983 년 법률 제 5 호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 - 포획 어업 사업에 관한 PER.12/MEN/2009 호에 의하여 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05/MEN/2008 호 - 정부 정책

7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 1429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바다 모래 채취에서의 외국인 투자 설립 및 운영이 금지된다.
조치근거	:	-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20 년 법률 제 3 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9 년 법률 제 4 호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공기업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지정기업[4]으로 제한된 활동이 지정기관 외의 활동으로 자유화되거나 그러한 지정기업이 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내국민 대우(제 10.3 조)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는 적용될 수 없다.
조치근거	:	공기업에 관한 1998 년 정부령 제 13 호

[4] 설명의 목적상, 지정기업은 Perum PERHUTANI 로 표시되는 국영영림공사와 Perum PERURI 로 표시되는 인도네시아 조폐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이 협정의 발효일 전 존재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경우, 허가를 위한 승인에 부과된 조건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치근거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 (아래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음의 사업을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a. 소상공인, 중소기업[5]에 대한 유보 • 농장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 년 농업부 장관령 제 98 호 Jo. 2013 년 농업부 장관령 제 98 호의 제 2 차 개정에 관한 2017 년 농업부 장관령 제 21 호에 규정된 대로 특정 생산 능력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생산 능력을 가진 다음 농산물의 제조업자 - 건조 정향꽃, 동식물 원유, 코프라, 섬유, 코코넛 껍질 숯, 가루, 나타데코코, 코코넛 오일, 야자유, 면 섬유, 목화 종자, 농장 생산물(코코아콩 및 커피콩)의 탈피 · 세정 · 건조 및 선별, 건조 캐슈넛 및 캐슈넛 쉘 액용 캐슈넛, 건조 백후추 및 건조 흑후추용 후추, 사탕수수 · 사탕수수 상단 및 사탕수수 찌꺼기, 홍차 또는 녹차, 건조 담뱃잎, 시트용 고무 · 농축 라텍스, 자트로파 원유(ISIC 0111, 0140, 1513, 1514, 1531, 1542, 1549, 1600, 2429, 2519) • 어류 가공: 어류 삶기(ISIC 1512) • 뗌뻬 및 두부 형태의 대두 가공식품의 제조(ISIC1513, 1514, 1549) • 간장, 뗌뻬 및 두부 외 대두 · 콩식품의 제조(ISIC 1513, 1549) • 부패성 조제케이크 제조(ISIC 1513, 1514, 1549) • 크래커(krupuk), 플레이크(keripik), 튀기고 조미된 비스킷(peyek) 및 동종식품의 제조(ISIC 1513, 1514, 1549) • 팜 슈가, 자바설탕 또는 적설탕의 제조(ISIC 1542) • 뿌리 및 괴경 마일링(탈피 및 세정)(ISIC 0140,

[5] 이 유보의 목적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라는 용어는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1531) • 패턴이 있는/담근/묶인 원사용 천연 및 인공 섬유 수공구 원사 염색(ISIC 1711) • 직물 인쇄 산업(ISIC 1712, 1729) • 수공 바틱 산업(ISIC 1712, 1729) • 니트직물, 특히 레이스 산업(ISIC 1730) • 무슬림 여성의 기도복, 스카프, 머리 스카프 및 그 밖의 전통 산업(ISIC 1810) • 자수 산업(ISIC 1729) • 수공업: 등나무 및 대나무 조물 산업, 등나무 및 대나무 외 식물 조물 산업, 가구 산업 외 나무 수공예 조각산업, 나무 · 등나무 및 대나무 가정용 주방 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나무 · 등나무 · 코르크 제품 산업(ISIC 2029, 3699) • 전통 악기(ISIC 3692) • 고무 경화 산업(ISIC 2519) • 점토 가정용품, 특히 도자기 산업(ISIC 2691) • 괭이와 삽 외 토지 준비, 생산 가공, 수확 후 가공용 농작 수공구 산업(ISIC 2893) • 수공 및 절단용 수동 또는 반자동 수공구 산업(ISIC 2893) • 모터사이클 정비 및 수리, 다만 모터사이클 판매와 통합된 경우는 제외(대리인 또는 유통업자)(ISIC 5040) • 개인 및 가정 물품 수리(ISIC 3610, 5260) • 임산물 가공 1 차 산업: 소나무 수액(올레오 송진) 및 대나무(ISIC 0200) • 생산능력 연간 2,000m^3 이하 제재소 또는 제재업 • 등나무 가공 1 차 산업(ISIC 2010) b. 100 퍼센트 국내지분 참여 • 방위 및 안보를 위한 주요 장비 산업(ISIC 2520, 2893, 2927, 2929, 3530, 3610) • 전통 의약품 및 천연 추출물 가공 산업(ISIC 2423)
조치근거	:	- 투자에 관한 2007 년 법률 제 25 호 - 농장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39 호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 - 윤활유 공급 및 서비스에 관한 2001 년 대통령령 제 21 호 - 농장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 년 농업부 장관령 제 98 호 Jo. 2013 년 농업부 장관령 제 98 호 제 2 차 개정에 관한 2017 년 농업부 장관령 제 21 호 - 정부 정책

분야	:	농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 (아래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음의 사업을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6]에 대한 유보 • 면적 25헥타르 미만 각 개별 작물 재배 - 주식 작물(쌀, 옥수수, 대두, 땅콩, 강낭콩, 카사바 및 고구마)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식량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면적 25헥타르 미만 각 개별 농장종묘사업 – 자트로파 작물,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수수, 담배, 섬유원료 및 면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작물, 캐슈, 코코넛 야자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에센셜 오일 작물, 의약 제약 작물(원예 외의 것), 그 밖의 향신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 및 그 밖의 나무(ISIC 0111, 0112, 0113, 0200) • 면적 25헥타르 미만 각 개별 농장사업 -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수수, 담배, 섬유 원료 및 면화, 캐슈, 코코넛 야자 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에센셜 오일 작물, 원예 외의 의약 또는 제약 작물, 그 밖의 향신 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 및 그 밖의 나무, 그 밖의 농장 (ISIC 0111, 0112, 0113, 0200) • 125마리 이하의 수의 돼지 사육 및 농장(ISIC 0122) • 토종닭(ayam buras) 사육 및 농장과 그 이종교배 및 농장(ISIC 0122)

[6] 이 유보의 목적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는 용어는「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제 44 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조치근거	:	- 농장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39 호 - 가축 및 동물 건강에 관한 2009 년 법률 제 18 호 및 2009 년 법률 제 18 호 개정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41 호 - 임업에 관한 1999 년 법률 제 41 호 -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 년 법률 제 5 호 -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이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 년 정부령 제 3 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 년 정부령 제 6 호 - 식물 및 야생동물종의 이용에 관한 1999 년 정부령 제 8 호 - 식물 재배사업에 관한 2010 년 정부령 제 18 호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 - 농장종묘에 관한 1995 년 정부령 제 44 호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 년 농업부 장관령 제 98 호 Jo. 2013 년 규정 제 98 호의 제 2 차 개정에 관한 2017 년 농업부 장관령 제 21 호 - 축산 분야 면허 및 등록 지침에 관한 2002 년 농업부 장관령 제 404 호 - 원예작물 재배 면허 지침에 관한 2014 년 농업부 장관령 제 70 호 - 수의서비스 지침에 관한 2009 년 농업부 장관령 제 2 호 - 주요 작물 재배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0 년 농업부 장관령 제 39 호 - 정부 정책

분야	:	임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 (아래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음의 사업을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a. 소상공인, 중소기업[7]에 대한 유보 1) 그 밖의 산림 식물(종려당, 캔들넛, 타마린드 종자, 숯 원료, 계피) 개발 (ISIC 0200) 2) 천연 제비둥지 개발(ISIC 0122) b. 100 퍼센트 국내 지분 참여 3) 천연림에서의 산림목재 제품 개발 (ISIC 0200) 4) 산림수 또는 식물의 품종 및 종자 재배 및 거래(산림수/식물의 품종 및 종자의 수출입) (ISIC 5121) 5) 산림지역 수자원 개발 (ISIC 0200) 6) 천연 야생동식물 서식지에서의 야생동식물 포획 및 거래 (ISIC 0150)
조치근거	:	- 임업에 관한 1999 년 법률 제 41 호 - 천연자원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 년 법률 제 5 호 -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활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 년 정부령 제 3 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 년 정부령 제 6 호 - 국립공원 활용지역, 산림대공원, 자연관광공원 내 자연관광 허가에 관한 2010 년 정부령 제 36 호 - 식물 및 야생동물종의 이용에 관한 1999 년 정부령 제 8 호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 - 정부 정책

[7] 이 유보의 목적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이라는 용어는「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제44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1. 관련 규제 당국에 의하여 요구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8]가 100 퍼센트 지분 참여를 소유하는 기업은, 면허 부여 전 사전 통보를 조건으로, 상업 생산을 개시한지 일정 기간 후,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9]에게 기업지분의 일부를 매각해야 할 것이다. 2. 광물 및 석탄 광업 하위 분야[10]의 경우, 외국인 투자[11]를 위한 광업사업면허(Izin Usaha Pertambangan)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부여된다. 생산 개시 5 년 후, 광업사업면허(Izin Usaha Pertambangan) 부여 전 사전 통보를 조건으로, 외국인 투자의 외국인 주주[12]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도네시아인 주주[13]에게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다. 1) 중앙 정부 2) 지방 정부 3) 구/지방자치당국 4) 국영기업(Badan Usaha Milik Negara 및 Badan Usaha Milik Daerah), 그리고 5) 국가민간사업체[14] 해당 인도네시아인 주주의 지분은 생산 개시 후 10 년

[8]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자” 라는 용어는「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제25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9] 이 유보의 목적상, “국내 투자자”라는 용어는「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제25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의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은「1994년 정부령」제20호에 근거하고「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제25호의 명문화 후 이루어진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10] 이 유보의 목적상, 광물 및 석탄 광업 하위 분야의 범위는「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20 년 법률」제 3 호에 의하여 개정된 대로「2009 년 법률」제 4 호와「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 년 정부령」제 23 호 Jo.「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 년 정부령」제 23 호의 제 4 차 개정에 관한「2017 년 정부령」제 1 호에 정의된다.
[11]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투자” 라는 용어는「투자에 관한 2007년 법률」제25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12] 이 유보의 목적상, "외국인 주주"라는 용어는「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제23호의 개정에 관한「2012년 정부령」제24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13] 이 유보의 목적상, "인도네시아인 주주” 라는 용어는「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의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제23호 Jo.「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제23호의 개정에 관한「2012년 정부령」제24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14] 이 유보의 목적상, "국가민간사업체"라는 용어는「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년 정부령」제23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후에 과반수에 도달한다.
조치근거	:	- 투자에 관한 2007 년 법률 제 25 호 -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20 년 법률 제 3 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9 년 법률 제 4 호 - 해안지역과 작은 섬 관리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1 호 - 외국자본투자에 따라 설립된 기업에서의 지분 소유에 관한 1994 년 정부령 제 20 호 -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 년 정부령 제 23 호 Jo 제 3 차 개정에 관한 2014 년 정부령 제 77 호 Jo 제 4 차 개정에 관한 2017 년 정부령 제 1 호 - 지분매각 절차 및 주식매각 가격책정 메커니즘에 관한 2017 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령 제 9 호 - 광물 및 석탄 광업 사업에 관한 2018 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령 제 25 호

분야	:	광업 및 채석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 1010, 1020, 1030, 1310, 1320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광업사업면허(이하 "WIUP"라 한다)는 광업사업면허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지역을 지칭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다른 당사자의 법인은 500 헥타르 미만 면적의 금속광물 및 석탄 WIUP 의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치근거	:	- 광물 및 석탄 광업에 관한 2020 년 법률 제 3 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9 년 법률 제 4 호 -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10 년 정부령 제 23 호 Jo. 2010 년 정부령 제 23 호의 제 4 차 개정에 관한 2017 년 정부령 제 1 호 - 광물 및 석탄 광업 활동 보고와 지역 면허 부여 절차에 관한 2018 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령 제 11 호

1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비거주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원천에서 다음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 퍼센트가 될 것이다. a. 이자 b. 로열티 c. 배당금, 또는 d. 인도네시아에서 행해진 서비스 수수료
조치근거	:	소득세에 관한 1983 년 법률 제 7 호의 제 4 차 개정에 관한 2008 년 소득세법 제 36 호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제 10.6 조(이행요건 금지)에 따른 의무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이러한 요건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한다. a.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b.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관련시킬 것 c.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자신의 영역에서의 상품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d.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을 수출할 것 e. 자신의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 년 법률 제 40 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로서 설립된 법적 실체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인 근로자에게 훈련 및 기술 이전을 제공하도록 요구된다.
조치근거	:	- 투자에 관한 2007 년 법률 제 25 호 -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 년 법률 제 40 호 - 정부 정책

17

분야	:	농업, 제조업
하위 분야	:	원예
산업 분류	:	ISIC 0111, 0112, 0113, 0140, 1513, 1514, 1531, 1549, 2423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제 10.3 조(내국민 대우)와 제 10.7 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원예 사업 활동의 설립 및 운영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는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a. 발아 b. 재배 c. 수확 및 수확 후 d. 가공 e. 유통, 거래 및 마케팅 f. 연구, 그리고 g. 농업 관광 원예에 관한 2010 년 법률 제 13 호와 그 이행 규정에 명시된 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조정을 목적으로 원예 하위 분야[15]의 기존의 투자자[16]에게 4 년의 과도기간이 주어진다. 원예 하위 분야의 정의는 2010 년 법률 제 13 호에서 찾을 수 있다.
조치근거	:	- 원예에 관한 2010 년 법률 제 13 호 - 정부 정책

[15] 이 유보의 목적상, 원예 하위 분야의 정의는「원예에 관한 2010 년 법률」제 13 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16] 이 유보의 목적상, 기존의 투자자는「원예에 관한 2010 년 법률」제 13 호 제정 전에 존재하는 기존의 투자자를 지칭한다.

목록 나

주해

1.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이 목록은 다음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10.3조(내국민 대우)

   나. 제10.4조(최혜국 대우)

   다.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그리고

   라.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제10.8조(유보 및 비합치 조치)에 따라 목록 가와 이 목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목록 접근방식과 함께 네거티브 목록을 따른다.

   가. 목록 가는 동결 의무 대상이지만 래칫 메커니즘 대상은 아닌 기존의 비합치 조치와 관련된 약속을 규정한다. 그리고

   나. 이 목록은 분야, 하위 분야 그리고 행위에서 조치와 관련된 정책 유연성을 규정한다.

3. 각 유보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들)**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들)**는 유보된 구체적인 산업/제품/행위를 지칭한다.

   다. **산업 분류**는 다음에 따라 유보의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1)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광업 및 채석업의 경우 국제표준산업분류3차 개정안(이하 “ISIC”라 한다)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아세안 통일 관세품목분류표 코드, 또는

2) 유보가 ISIC에 정확히 합치하지 않는 경우, 인도네시아는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유보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다.

라. **정부 수준**은 유보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 수준(예, 중앙 또는 지방)을 명시한다.

마. **의무의 유형**은, 각 경우에 맞게, 나열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및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의 의무를 지칭한다.

바. **조치내용**은 유보된 제10.3조(내국민 대우), 제10.4조(최혜국 대우), 제10.6조(이행요건 금지) 또는 제10.7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지칭한다. 그리고

사. **조치근거**는 유보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지칭하고, 투명성 목적으로만 적시된다.

4. 유보의 해석 시 유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조치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5. 이 주해는 인도네시아 유보의 일부를 구성한다.

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토지 및 재산에 대한 관습적 권리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방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소수 부족 집단의 토지 및 재산의 관습적 권리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1945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 33 조 - 정부 정책

2

분야	:	제조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 (아래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 차량 정비 및 수리(ISIC 5020) • 특허 의약품 산업(ISIC 2423) b. 파트너십 요건 • 코프라 제조 업체(ISIC 1514) • 가당 및 염장 과일과 채소 산업(ISIC 1513) • 간장 제조업체(10771) • 분유 및 농축우유 가공 및 산업 (ISIC 1520) • 바틱 인쇄 산업 (ISIC 1712) • 등나무 가공 산업(ISIC 2010) • 등나무, 대나무 및 이와 유사한 것의 보존 산업(ISIC 2010) • 목재 제품의 제조업체(몰딩 및 건축 자재 부품 산업)(ISIC 2029) • 에센셜 오일 산업(ISIC 2429) • 담배 건조 및 예비 가공 산업 (ISIC 1600) • 벽돌 및 점토 또는 세라믹 산업(ISIC 2691, 2692, 2693) • 점토 또는 세라믹제품 산업(ISIC 2691, ISIC 2693) • 석회산업(ISIC 2694) • 시멘트제품 산업(ISIC 2695) • 석회제품 산업(ISIC 2695) • 그 밖의 시멘트 및 석회 제품 산업(ISIC 2695) • 못, 너트 및 볼트 산업, 엔진/터빈(원동기)의 부품 및 예비부품 산업, 펌프 및 압축기 산업, 부품과 이륜 및 삼륜 차량 부속품 산업, 자전거 및 페디캡(베짝)부속품 산업(ISIC 2899, 2911, 2912, 3591, 3592) • 벼·옥수수 탈곡기 및 수동 트랙터와 같은 중간 기술을 사용하는 농업 기계 산업(ISIC 2921) • 해양 관광 및 낚시용 목재 선박 제조업체(ISIC 3511, 3512) • 해양 관광 및 낚시용 목재 선박의 장치 및 부속품

제조업체(ISIC 3511)
- 개인용 귀금속 장식품 제조업체(ISIC 3330, 3691)
- 비개인용 귀금속 장식품 제조업체(ISIC 3330, 3691)
- 비개인용 비귀금속 장식품 제조업체(ISIC 3330, 3699)
- 보석 제조(ISIC 3691)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공예품 제조(ISIC 3699)
- 비금속 폐기물 재활용(ISIC 3720)
- 사탕 수수로부터의 설탕산업(백설탕, 정제설탕 및 원당)(ISIC 1542)
- 수산물가공산업: 다른 해역으로부터의 어류와 수산물의 염장 및 건조(ISIC 1512), 다른 해역으로부터의 어류와 수산물의 훈제(ISIC 1512), 어류 효모 또는 발효 그리고 추출 및 생선 젤리용 그 밖의 조리된 제품(ISIC 1512, 1549), 다진 어류와 연육 가공(ISIC 1512)

c. 관련 당국에 의한 추천 또는 특정요건
- 담배 산업
  - 정향 담배 산업(ISIC 1600)
  - 일반 비정향 담배 산업(ISIC 1600)
  - 그 밖의 담배 산업(ISIC 1600)
- 특수 제지 제조업체(특히 지폐용지, 수표용지, 워터마크용지)(ISIC 2101)
- 화폐 인쇄 및 특수 인쇄 산업 또는 우표, 인지, 지폐용지·수표 용지·워터마크 용지와 같은 귀중한 용지, 여권, 인구 통계 문서 및 홀로그램과 같은 보안 문서, 화폐 인쇄 산업. 산업부 장관 및 국가정보기관의 특별허가 필요(ISIC 2221)
- 미클라메이트 및 사카린 산업(ISIC 2411)
- 특수잉크산업(ISIC 2429)
- 납 제련 산업(ISIC 2720)
- 생산 또는 산출 능력이 연간 2,000m^3 를 초과하는 제재소 또는 제재업(ISIC 2010)
- 베니어판 산업, 합판 산업, 단판적층재 산업(ISIC 2021)
- 우드 칩 산업 및 우드 펠릿 산업(ISIC 2029)
- 제약산업용 마취제(제약산업)(ISIC 2423)
- 의료장비산업:
  - B 등급(수술용 마스크, 주사기, 환자 모니터, 콘돔, 수술용 장갑, 혈액 투석액, PACS, 수술용 칼)(ISIC 2423)
  - C 등급(IV 카테터, X 선, ECG, 환자 모니터, 정형외과 임플란트, 콘택트 렌즈, 산소 농도계, 농도계)(ISIC 2423)
  - D 등급(CT 스캔, MRI, 심장 카테터, 심장 혈관 스텐트, HIV 테스트, 심박 조율기, 피부필러, 절제

		카테터)(ISIC 2423) d. 원자재 공급원에 대한 요건 • 펄프산업(나무로부터)(ISIC 2101) e. 위 요건들의 조합 • 조각 고무 산업(ISIC 2519) • 폭발물용 원자재 산업(ISIC 2411) • 폭발성 자재 산업 및 그것의 산업용 부속품(ISIC 2429) • 의료장비 산업 - A등급(면, 붕대, 스틱, IV 폴, 생리대, 성인용 기저귀, 환자 침대, 휠체어)(ISIC 2423) • 「농장사업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제2차 개정에 관한「2017년 농업부 장관령」제21호에 규정된 대로 25헥타르 이상 면적에서 특정 면적까지 다음 작물을 위한 작물 농장 종묘 사업 산업 - 자트로파 커카스,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수수, 담배, 섬유 원료 및 면화, 캐슈, 코코넛 야자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나무, 에센셜 오일 작물, 의약 제약 작물, 그 밖의 향신 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와 그 밖의 나무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농장사업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제98호 제2차 개정에 관한「2017년 농업부 장관령」제21호에 규정된 대로, 특정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생산능력으로, 25 헥타르 이상 면적에서, 가공산업을 갖춘, 다음 작물을 위한 농장 사업 - 캐슈 농장 및 건조 캐슈 너트와 캐슈 너트 쉘 액의 제조(ISIC 0113, 1513, 1549) - 후추 농장 및 건조한 백후추와 건조한 흑후추의 제조(ISIC 0112, 1513, 1549) - 자트로파 농장 및 자트로파 오일의 제조(ISIC 0111, 0112, 2429) - 사탕 수수 및 사탕 수수 설탕, 사탕 수수 상단 및 사탕 수수 찌꺼기의 제조(ISIC 0111, 1542) - 담배 및 건조한 담뱃잎의 제조(ISIC 0111, 1600) - 면화 농장과 면화 섬유의 제조(ISIC 0111) - 코코넛 야자나무 농장 및 코코넛 오일 제조(ISIC 0113, 1514) - 코코넛 야자나무 농장 및 코프라, 섬유, 코코넛 껍질 숯, 가루 및 나타데코코의 제조(ISIC 0113,

		1514, 1549) - 기름 야자나무 농장 및 야자유의 제조(CPO)(ISIC 0113, 1514, 1549) - 커피 농장 및 커피콩 탈피, 세정 및 선별 제조(ISIC 0113, 1513) - 코코아 농장 및 코코아 콩 탈피, 세정 및 건조 제조(ISIC 0113, 1513, 1549) - 차 및 홍차 또는 녹차의 제조(ISIC 0113, 1513, 1549) - 정향 농장 및 건조한 정향 꽃의 제조(ISIC 0113, 0140, 1549) - 에센셜 오일 작물 농장 및 에센셜 오일의 제조(ISIC 0111, 01112, 0113, 2429) - 고무 농장 및 시트 제조, 농축 라텍스(ISIC 0111, 2519) - 커피 및 코코아 콩 외의 곡물 농장과 커피 콩 및 코코아 콩 외의 곡물 탈피 및 세정 제조(ISIC 1513, 1549) • 「농장사업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제2차 개정에 관한「2017년 농업부 장관령」제21호에 규정된 대로 특정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다음 농산품의 제조업체 - 미가공의 식물성 및 동물성 오일 (식용유), 코프라·섬유·코코넛 껍질 숯· 가루·나타데코코, 코코넛 오일, 야자유, 코코아 콩 및 커피 콩 생산물의 탈피·세정·건조 및 선별, 사탕 수수 설탕· 사탕 수수 상단 및 사탕 수수 찌꺼기, 홍차 또는 녹차, 건조한 담뱃잎, 가공하지 않은 자트로파 오일, 면화 섬유 및 면화 종자, 시트용 고무·농축 라텍스, 건조한 캐슈 너트 및 캐슈 너트 쉘 액용 캐슈, 건조한 백후추와 건조한 흑후추용 후추, 건조한 정향 꽃(ISIC 0111, 0140, 1513, 1514, 1531, 1542, 1549, 1600, 2429, 2519)
조치근거	:	- 투자에 관한 2007 년 법률 제 25 호 - 농장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39 호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 - 윤활유 공급 및 서비스에 관한 2001 년 대통령령 제 21 호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 년 농업부 장관령 제 98 호 Jo. 2013 년 농업부 장관령 제 98 호 제 2 차 개정에 관한 2017 년 농업부 장관령 제 21 호 - 의료기기 및 가정용 건강 제품 유통 인가에 관한 2017 년 보건부 장관령 제 62 호 - 정부 정책

3

분야	:	농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 (아래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 25헥타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 각 개별적 작물 종묘 또는 육성 사업에 대하여: – 주식 작물[쌀, 옥수수, 대두, 땅콩, 껍질콩(카사바 및 고구마 포함)]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량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계절 과일 작물, 포도, 열대 과일 작물, 감귤류, 사과, 인과류 및 핵과류, 장과류, 한해 야채, 다년생 야채, 약용 작물, 버섯, 원예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25헥타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 각 개별적 작물 재배 사업에 대하여: – 주식 작물(쌀, 옥수수, 대두, 땅콩, 껍질콩 및 카사바와 고구마를 포함한 그 밖의 식용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 계절 과일 작물, 포도, 열대 과일 작물, 감귤류, 사과, 인과류 및 핵과류, 장과류, 엽채류(양배추, 겨자, 파, 셀러리), 뿌리 채소(샬롯, 마늘, 감자, 당근), 열매가 열리는 채소(토마토, 오이), 칠리 페퍼, 파프리카, 버섯, 관상용 식물, 꽃이 아닌 관상용 식물(ISIC 0111, 0112, 0113, 0200, 1513) • 다음의 각 농업 관련 활동: – 원예 연구 및 품질 테스트 실험실, 원예 농업 관광 활동, 원예 수확 후 서비스, 꽃 소매 판매, 원예 개발 컨설턴트, 원예 조경 및 원예 과정 서비스(ISIC 0140, 2022, 7310, 9219, 9241, 9249, 5239, 7414, 7421, 8090, 9241) – 농업유전자원과 공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 제품 과학 및 공학(유전 공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ISIC 7310)

		b. 입지 요건 • 125마리가 넘는 수의 돼지 사육 및 농장(ISIC 0122) c. 위 요건의 조합 • 「농장사업면허 지침에 관한 2013년 농업부 장관령」제98호 Jo.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98호 제2차 개정에 관한 2017년 농업부 장관령」제21호에 규정된 대로 25헥타르 이상 면적에서 특정 면적까지 어떠한 가공 장치도 없는 다음 작물에 대한 농장 사업 – 자트로파 커카스, 그 밖의 감미료 작물, 사탕수수, 담배, 섬유 원료 및 면화, 캐슈, 코코넛 야자나무, 기름 야자나무, 음료 작물(차, 커피 및 코코아), 후추, 정향, 에센셜 오일 작물, 의약 제약 작물, 그 밖의 향신 작물, 수액 추출용 고무 및 그 밖의 나무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작물(ISIC 0111, 0112, 0113, 0200)
조치근거	:	- 농장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39 호 - 가축 및 동물 보건에 관한 2009 년 법률 제 18 호 및 2009 년 법률 제 18 호 개정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41 호 - 임업에 관한 1999 년 법률 제 41 호 - 천연 자원과 그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 년 법률 제 5 호 -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활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 년 정부령 제 3 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 년 정부령 제 6 호 - 식물 및 야생 동물 종의 이용에 관한 1999 년 정부령 제 8 호 - 식물 재배 사업에 관한 2010 년 정부령 제 18 호 - 농장의 종묘에 관한 1995 년 정부령 제 44 호 -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 - 농장 사업 면허 지침에 관한 2013 년 농업부 장관령 제 98 호 Jo. 2013 년 장관령 제 98 호의 개정에 관한 2016 년 농업부 장관령 제 29 호 - 가축 분야에 대한 면허 및 등록 지침에 관한 2002 년 농업부 장관령 제 404 호 - 원예 분야에 대한 면허 지침에 관한 2003 년 농업부 장관령 제 348 호 - 수의서비스 지침에 관한 2009 년 농업부 장관령 제 2 호 - 주요 작물 재배 사업 면허에 대한 지침에 관한 2010 년 농업부 장관령 제 39 호 - 정부 정책

4

분야	:	임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 (아래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1)수렵 공원 및 수렵 구역에서의 수렵 사업 (ISIC 0150, 9219, 9241, 9249) 2)동식물 포획 번식 및 보존 기관(ISIC 0150) b. 파트너십 요건 1) 산림 식물의 개발: 등나무(ISIC 2010), 소나무 수액(올레오 송진)(ISIC 0200), 대나무 (ISIC 0200), 우드 로진 또는 쇼레아 자바니카(다마르)(ISIC 0200), 이글우드 또는 아퀼라리아 말라카 첸 시스(가하루)(ISIC 0200) 2) 셀락, 대체 식량 작물(사구), 수지 및 양봉의 개발(ISIC 0200) 3) 누에 고치 생산(천연견사 농사)(ISIC 0122) c. 관련 당국에 의한 추천 또는 특정요건 1) 식물 및 야생생물 유전학에 사용되는 기술의 개발(ISIC 0200)
조치근거	:	- 임업에 관한 1999 년 법률 제 41 호 - 천연자원과 그 생태계 보존에 관한 1990 년 법률 제 5 호 - 산림 관리 계획 및 산림 활용에 대한 산림 행정 및 편찬에 관한 2008 년 정부령 제 3 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7 년 정부령 제 6 호 - 국립공원 활용지역, 삼림대공원, 자연관광공원 내 자연관광 허가에 관한 2010 년 정부령 제 36 호 - 식물 및 야생 동물 종의 이용에 관한 1999 년 정부령 제 8 호 - 투자 금지 사업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 - 정부 정책

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방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을 포함하는 정부 자산, 기관 또는 단체의 민영화, 기업화, 상업화 또는 주식 매각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자산 소유권에 대한 제한 b. 지분 또는 그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 c. 자산을 통제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의 권리, 그리고 d. 고위경영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1) 인도네시아가 기존 공기업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러한 이전은 이 유보의 목적상 지분의 초기 이전 또는 처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2) 인도네시아가 여러 단계에서 기존 공기업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1)호는 그러한 각 단계에 별도로 적용된다.
조치근거	:	- 국영기업에 관한 2003 년 법률 제 19 호 -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2007 년 법률 제 40 호 - 정부 정책

6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방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협동조합(Usaha Mikro, Kecil, Menengah dan Koperasi 또는 UMKMK)에 주어지는 특별 선호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17].
조치근거	: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관한 2008 년 법률 제 20 호 - 협동조합에 관한 1992 년 법률 제 25 호 - 정부 정책

[17] 이 유보의 목적상, "소상공인·중소기업(UMKM)"이라는 용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협동조합" 이라는 용어는 「협동조합에 관한 1992년 법률」 제25호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설명의 목적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기준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관한 2008년 법률」 제20호에 규정된 대로 다음과 같다.

a. 소상공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빌딩 제외 최대 5천만 루피아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 또는
   2) 최대 3억 루피아의 연간 매출액을 보유할 것
b. 소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빌딩 제외 5천만 초과 최대 5억 루피아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 또는
   2) 3억 초과 최대 25억 루피아의 연간 매출액을 보유할 것
c. 중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빌딩 제외 5억 초과 최대 100억 루피아의 순자산을 보유할 것, 또는
   2) 25억 초과 최대 500억 루피아의 연간 매출액을 보유할 것
d. 위의 a호, b호 및 c호에 결정된 대로의 명목상 액수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7

분야	:	어업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ISIC (아래 참조)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 하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파트너십 요건 • 어류 부화장 및 양식: 바다 물고기, 기수 물고기, 민물고기(ISIC 0502) b. 관련 당국에 의한 추천 또는 특정요건 • 산호 또는 장식용 산호초의 재배(ISIC 0150)
조치근거	:	- 어업에 관한 2009 년 법률 제 45 호에 의하여 개정된 2004 년 법률 제 31 호 -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1983 년 법률 제 5 호 - 투자 금지 사업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 - 포획 어업 사업 관련 PER.12/MEN/2009 호에 의하여 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05/MEN/2008 호 - 양식업 면허 관련 인도네시아 공화국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12/MEN/2007 호 - 양식업 규모 관련 인도네시아 공화국 해양수산부 장관령 PER.05/MEN/2009 호 - 야생 식물 및 동물의 이용 또는 포획 및 유통에 대한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산림부 장관령 447/Kpts-II/2003 호 - 정부 정책

분야	:	에너지
하위 분야	:	소규모 발전소(10 메가와트 미만)
산업 분류	:	ISIC 4010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소규모 발전소(10 메가와트 미만)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사정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하여 인지되었거나 인지되었어야 하는 것을 제외한 분야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에 ISIC Rev. 3 에 명시적으로 분류되는 어떠한 분야도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하여 인지되었어야 한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

10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간과되었던 외국인 투자자나 투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존 조치도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관련된 조치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이미 시행 중이어야 한다. 간과된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이 유보목록의 목록 가에 신속하게 삽입될 것이다. 위 단락에 언급된 간과된 조치가 확인되는 경우, 인도네시아는 그 조치를 자신의 유보목록에 포함하기 최소 90 일 전에 다른 당사자들에게 조치의 세부 정보와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이 유보목록에 간과된 조치의 추가를 통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한 투자자로부터 권리 또는 혜택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

11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지방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조치내용	:	내국민 대우는 지방정부 차원[18]에서 투자 이행 면허 또는 허가[19]의 절차적 측면에 관련된 조치에 적용될 수 없다.
조치근거	:	- 지방정부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 23 호 - 지방 규정 - 정부 정책

[18] 이 유보의 목적상, 지방정부 차원이란 지방정부 수준을 말한다.
[19] 설명의 목적상, 이는 위치 허가 및 건축 허가를 포함할 수 있다.

12

분야	: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선언된 식량 안보 긴급상황의 기간 동안에만 식량 안보 긴급상황을 다루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 1945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 33 조 - 식량에 관한 2012 년 법률 제 18 호 - 식량 안보 및 영양에 관한 2015 년 정부령 제 17 호 - 정부 정책

13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산업 분류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서비스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요율 또는 금액과 관련하여 미래의 비합치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조치근거	:	정부 정책

15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및 지방
의무의 유형	: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결과로 비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더 유리한 대우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a.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기존의 또는 미래의 특혜 협정이나 약정 b.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기존의 협정, 그리고 c.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국제 협정 1) 항공 2) 수산, 또는 3)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조치근거	:	정부 정책

분야	: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사업 분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마리화나 재배(ISIC 0111)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록 I에 열거된 어종의 포획(ISIC0500) • 침몰 선박에서 유가품 인양(ISIC 6303) • 건축자재, 석회 또는 칼슘, 수족관 및 기념품 또는 보석을 위한 천연 산호와 천연의 살아있는 산호 또는 죽은 산호(최근에 죽은 산호)의 활용(채집)(ISIC0500) • 수은 가공에 따른 클로랄 알칼리 제조 산업(ISIC 2411) • 살충제 활성 물질 산업: 디클로로 디페닐 트리클로로에탄(DDT),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클로르데인, 헵타클로르, 미렉스 및 톡사펜(ISIC 2421) • 산업용 화학물질 산업과 오존 파괴 물질(BPO): 폴리염화 비페닐(PCB), 헥사클로로벤젠 및 사염화탄소(CTC), 메틸 클로로포름, 메틸 브로마이드, 트리클로로 플루오로 메탄(CFC−11), 디클로로 트리플루오로 에탄(CFC−12), 트리클로로 트리플루오로 에탄(CFC−113), 디클로로 테트라 플루오로 에탄(CFC−114), 클로로 펜타플루오로 에탄(CFC−115), 클로로 트리플루오로 메탄(CFC−13), 테트라클로로 디플루오로 에탄(CFC−112), 펜타클로로 플루오로 에탄(CFC−111), 클로로 헵타플루오로 프로판(CFC−217), 디클로로 헥사플루오로 프로판(CFC−216), 트리클로로 펜타플루오로 프로판(CFC−215), 테트라클로로 테트라플루오로 프로판(CFC−214), 펜타클로로 트리플루오로 프로판(CFC−213), 헥사클로로 디플루오로 프로판(CFC−211), 브로모 클로로 디플루오로 메탄(Halon−1211), 브로모 트리플루오로 메탄(Halon−1301), 디브로모 테트라플루오로 에탄(Halon−2402), R−500, R−502(ISIC 2411)

		• 화학무기로서의 화학물질 이용에 관한 2008년 법률 제9호 부록 I에 통합된 화학무기금지협약 목록 I에 열거된 화학물질 산업(ISIC 2411) • 알코올 성분 함유 증류주 산업(ISIC 1551) • 알코올 성분 함유 음료 산업: 와인(ISIC 1552) • 맥아 음료 산업(ISIC 1553)
조치근거	:	- 투자 금지 사업분야 및 조건부 투자 개방 사업분야 목록에 관한 2016 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령 제 44 호 - 정부 정책

17

분야	:	모든 분야
하위 분야	:	–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10.3 조) 최혜국 대우(제 10.4 조) 이행요건 금지(제 10.6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 10.7 조)
조치내용	:	인도네시아는 국내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민간 전자시스템 운영자에게 전자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그 조치는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 12.3 조(적용범위)의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 12.14 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및 제 12.15 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의무로부터 인도네시아를 면제하는 효과를 갖지 않는다.
조치근거	:	– 전자시스템 조직 및 거래에 관한 2019 년 정부령 제 71 호 – 정부 정책